

## 2019년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사업 FAQ

- 본 내용은 2019년 7월 1일 진행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사업설명회 당시 발표자료에 있는 FAQ의 질문, 사업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나온 질문, 그리고 이후 전화 및 메일 등으로 들어온 문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후에도 접수되는 문의 내용 중 공통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정리하여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본 내용 및 기타 문의가 있는 경우,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  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
  - 무용/음악분야(사업 총괄) 061-900-2192 / khy@arko.or.kr
  - 연극분야 061-900-2199 / hwang@arko.or.kr
  - 전통예술분야 061-900-2197 / mirinae1117@arko.or.kr

## <사업신청 및 필수이행사항 관련>

1.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입니다. 이럴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>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상에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'단체'로 가입하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2. 단체명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칭이 동일해야 하나요? 동일하지 않다면, 새로 동일한 명칭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신청 가능한가요?

->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. 사업자 등록증은 새로 만들어도 가능하지만 제출 마감기한(7.26(금))을 감안하셔야 합니다.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시간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단체를 등록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. 다만, 단체명과 사업자 등록증상의 명칭이 다른 데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며,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실제 단체 활동 이력은 중견단체에 해당되나, 단체명 변경 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, 서류상으로는 유망단체에 해당합니다. 이런 경우는 지원유형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> 중견단체와 유망단체를 구분한 이유는 활동이력 등이 중견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유망단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.

-> 서류상으로 유망단체에 해당하시더라도, 실제 활동 이력이 중견단체에 해당하시는 경우 중견단체로 신청 부탁드립니다.

-> 또한, 단체의 실제 활동은 2014년 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, 설립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, 중견 단체로 신청 부탁드립니다.

4. 최근 3년간 공연을 4회(중견단체) 또는 2회(유망단체)를 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, 같은 공연을 다른 곳에서 한 경우 각각의 공연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?

-> 네, 같은 공연이더라도 다른 날짜, 다른 장소에서 공연하신 경우 각각의 공연 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. 단, 4회(중견단체) 또는 2회(유망단체)의 공연 실적은 지원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.

5. <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지원> 등 유사 다년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단체입니다. 사업신청 가능한가요?

->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기존의 활동에 비해 이번의 중장기창작 프로젝트가 얼마나 차별성을 가지는 지에 대해 심의 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.

-> 2019년 7월 현재 지역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에 선정된 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, 상주단체 사업을 통해 진행하는 공연을 중장기 프로젝트에 동일하게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(중복 정산의 문제). 상주단체사업을 통해 발표한 공연을 추후 타 지역이나 축제, 해외 공연 추진 등 다른 형태의 공연으로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. 기존의 활동과 중장기 창작 프로젝트와의 차별성이 심의 시 참고 사항입니다.

6. 중견·유망단체의 선정비율, 지원예산은 정해져 있나요?

-> 현재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7월 26일(금) 지원 신청 접수 마감 이후 분야별(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), 중견·유망단체별 신청 건수 및 신청 금액 등을 고려하여 배분될 예정입니다.

7.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극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공연도 진행하고 자 합니다. 세부장르 중복 선택이 가능한가요?

-> 네, 세부 장르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. 단, 신청분야는 연극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 중 1개 분야만을 선택해 주셔야 지원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8. 상근직원은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, 지원 신청 시에 4대 보험 가입 해도 가능한가요?

-> 네, 가능합니다.

9.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 제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?

->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은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며, 단체에서 원할 경우 참고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.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며, 단체 상황에 따라 2019년 7월 기준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.

10.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 사업 신청 시 예산 입력 방법과 지원신청서 상의 수입예산 작성할 때, 이 사업에 관한 예산만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?

-> NCAS 시스템에 입력 시에는 2019년 신청예산만 기입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9년 9월~2022년 4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.

-> 지원신청서(한글파일) 상의 예산은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예산만 작성하시고, 중장기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의 다른 프로젝트나 공연의 예산까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.

**11. 지원신청서 양식 중 16페이지에 있는 최근 3년간 문예진흥기금 수혜 내역이 지원심의에 영향을 주나요?**

-> 지원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다만, 현재 문예기금 규정 상 한 단체에 한 해 3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책정 시,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**<사업계획 관련>**

**12. '창작 프로젝트'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? 지원기간 3년 동안, 무조건 새로운 순수창작 공연을 개발하거나 진행해야 하나요? 이미 정식, 유료로 공연된 적 있는 작품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 가능한가요?**

-> 신작 창작 뿐 아니라, 기존 작품의 개작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. 본 사업은 단체의 자율적인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, 반드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, 기존 프로젝트나 공연에 비해 얼마나 질적·양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**13. 하나의 공연(프로젝트)에 대한 개발, 발표과정만 신청 가능한가요?**

-> 단체의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하나의 공연을 개발 및 발표하실 수도 있으며, 여러 작품을 제작 및 공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단, 기존 프로젝트나 공연에 비해 얼마나 질적·양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지,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14. 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작품이나 레퍼토리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?

-> 네, 가능합니다. 다만, 기존 작품이나 레퍼토리를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질적·양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15. 중장기 프로젝트 수행 시 필수 조건인 '작품 발표'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? 비공개 공연, 내부 리딩 등 완성된 공연이 아니라도 관계없나요?

-> 공연 발표의 기준은 공연의 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. 단체 내부 인원이나 한정된 인원들만 참석할 수 있는 비공개 공연은 공연을 발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단,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사업의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16. 민간지원금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(작품)로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한가요?

->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민간지원금과 문예기금의 중복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해당 금액의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17. 지원기간 중 개발하거나 완성한 공연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기타 기관, 지자체 지원사업에 지원해도 상관없나요?

->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
18. 저작권을 취득하거나,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변안극(2차 창작 작품)에 대한 계획도 포함할 수 있나요?

-> 네, 포함 가능합니다. 다만, 향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19. 2019년 타 지원사업(예 : 창작산실 지원)에 선정된 A라는 작품을 개발 중입니다. 이 공연에 대한 내용을 올해 계획에는 포함하지 않되, 내년 계획에는 포함해도 되나요?

-> 네, 포함 가능합니다. 다만, 올 해 개발된 공연이 향후 질적·양적으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는 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-> 그리고, 2019년 현재 타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는 공연은 중장기창작지원으로 선정되더라도, 2019년도에는 중장기창작지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하실 수 없습니다. 타 문예진흥기금의 사업기간이 끝나고 정산이 완료된 이후 중장기창작지원의 지원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0. 창작 작품에 대한 기준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? 창작작품 및 기존 작품을 함께 발표하는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. 이런 경우는 인정이 불가능한가요?

-> 인정 가능합니다. 단, 공연의 완성도와 규모 등은 사업의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21. 무용 중 발레는 신작 창작이 있고, 기존 클래식 레퍼토리 공연도 있는데, 신작 창작만 신청할 수 있나요?

-> 기존의 클래식 발레,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재해석하거나 유통·확산 과정에서 단체의 창의성을 발휘한다면 가능합니다.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질적·양적인 차별성을 가지게 하는지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22. 기존 뮤지컬 음악을 30분으로 소규모 현악·관악기 구성으로 재구성 하는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한가요?

-> 형식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든 경우로,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기존 프로젝트와의 질적·양적인 차별성과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23. 지원금을 통해 일반적인 자산 취득은 불가능한데,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악기나 장비 등을 제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?

-> 원칙적으로는 보조금(지원금)을 통해 자산 취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.

24.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할 작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만 있는데,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> 네, 현재로는 발표 작품이 확정이 안 되어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체의 중장기 기획의도에 따른 3년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달성과정을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25. 프로젝트의 출연진 역시도 미확정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. 선정되었을 시 추후 출연진 명단 변경이 가능한가요?

-> 네, 변경 가능합니다. 다만, 제작진 및 출연진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, 예산 계획의 명확성과 규모에 대해서도 심의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.

26. 해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한가요?, 그리고 이에 따른 국외여비 책정도 가능한가요?

-> 네, 가능합니다. 하지만, 중장기 프로젝트가 예술위원회의 국제예술지원 사업과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.

27. 해외 제작 진행 시 해외인력과 협력하였을 때, 해외인력에 인건비 지급도 가능한가요? 또한 작품 시연 시 국내, 해외 시연 순서가 있는지?

-> 해외 인력에 대한 사례비 지급은 가능하지만,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계약서 및 송금증 등)가 잘 갖춰져야 합니다. 작품 시연 시에 국내, 해외에 대한 시연 순서는 단체의 계획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.

## <예산, 지출 및 정산>

28. 최대 지원가능 금액인 2억원은 단년 기준인가요? 최대 지원기간인 3년치 금액인가요?

-> 1년에 최대 2억원, 3년간 최대 6억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9. 직원 및 참여 예술가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? 운영 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?

->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운영경비(총 지원금의 30% 미만)로 포함하시고, 참여 예술가의 사례비는 직접경비(총 지원금의 70% 이상)에 포함하시면 됩니다.

30.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?

-> 상근직원, 정규직 직원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, 필요 시 지원금을 통해 4대 보험 지출이 가능합니다.

-> 다만, 일반 급여가 아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체결 및 원천징수를 해주시면 됩니다.

31. 3년간 예산은 동일하게 배정해야 되나요? 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도 상관없나요?

-> 단체가 준비하시는 프로젝트의 연도별 계획에 따라 총예산 및 지원 신청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2. 이번 심의를 통해 3개년 지원액이 모두 결정되는 건가요? 아니면 2019년도 지원액만 일단 결정되는 건가요?

-> 이 번 심의를 통해 2019년도 지원액만 결정되며,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



지원여부 및 지원 규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33. 단체 대표자도 프로젝트에 연출이나 감독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자의 사례비나 인건비는 책정 불가능한가요?

-> 단체 대표자의 사례비도 책정 가능합니다. 대표자 사례비를 포함한 구성원의 사례비 및 인건비는 심의기준 중 단체의 실현역량-단체의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단체 운영의 공정성, 구성원 보수 체계 항목을 통해 심의 시 참고하게 됩니다.

34. 회계검사 수수료가 필수 항목인데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?

-> 지원 금액 규모에 대해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, 대략 1년에 100만원 정도를 책정하시면 됩니다.

35. 지원금은 연도별로 정산해야 하나요? 3년 중 마지막 해에만 정산하면 되나요?

-> 지원금은 연도별로 기획재정부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정산하셔야 합니다. 지원금의 지급 역시 e-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연도별로 지급 됩니다.

### <실현역량, 사업평가>

36. 단체의 실현역량 부분은 기존에 보지 못하던 부분입니다.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심의기준인가요?

-> 중장기창작사업은 1회 행사 지원사업이 아닌, 다년간 지원사업입니다. 공연단체의 창작-제작 역량을 향상시키고 단체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

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.

- > 3년간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지,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,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심의 시 평가하게 됩니다.

### 37. 단체의 조직도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> 대표자 : ○○○, 예술감독 : □□□ 식으로 기술해 주셔도 됩니다. 정단원이나 상근직이 아닌 경우라도, 현실적으로 단체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인원이면 조직 구성원으로 기술하셔도 됩니다.

### 38. 연도별 성과평가는 어떠한 방식과 기준으로 실시되나요?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.

- > 연도별 성과평가의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은 현재 개발 중입니다. 다만, 큰 방향성은 사업목적과 추진방침에 따라 구성된 지원심의 기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. 그에 따라 사업계획의 달성 및 기대효과, 단체의 역량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.

### 39.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?

- >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문예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.